

##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

국세청 공고 제2021-72호(2021. 8. 3.)에 따른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(경북 일부)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### ○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

구 분	대 상	세정지원 세부기준
지역별	전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</li> <li>* (매출액 기준)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(업종 기준) 소비성 서비스업(호텔 및 여관업, 주점업)을 제외한 업종</li> </ul>
업종별	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홀덤펍</li> <li>•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</li> <li>•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파티룸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</li> <li>•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</li> <li>• 식당·카페, 이미용업, 목욕장업, 숙박시설, 상점·마트·백화점</li> <li>• 결혼식장, 장례식장 등</li> </ul>

○ 연장기간 : 3개월

○ 연장된 납부기한 : '21.11.30.

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부서 :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(044)204-3312, 3313

2021. 8. 25.

국 세 청 장